

마케팅규정

제정

2024. 01.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농구협회 정관 제4조에서 정한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마케팅자산의 활용 및 보호 등 한국농구 마케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팀”이란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할하고 있는 각급 농구 국가대표팀을 말한다.
2. “팀원”이란 각급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를 포함한 임원 및 선수를 말한다.
3. “이미지 등”이란 협회 또는 대표팀의 명칭, 로고, 마스코트, 디자인, 엠블럼, 캐릭터, 문장, 상표 외에 협회나 대표팀을 상징하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4.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대표팀원의 사진, 성명, 성 또는 이름, 예명, 필명, 초상, 사인, 음성, 만화, 캐릭터 디지털 영상을 포함한 각종 이미지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5. “마케팅자산”이란 다음 각 목에 나열한 협회의 유·무형 자산을 말한다.
 - 가. 지식재산권: 협회 또는 대표팀을 지칭 또는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회가 법령에 의한 지식재산으로 등록한 것
 - 나. 대회: 협회가 주최, 주관, 운영, 파견, 관리하는 모든 국내·외 경기대회
 - 다. 행사: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표팀 결단식 및 해단식, 각종 기자회견, 인터뷰 등
 - 라. 대회·행사 참가자[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및 관계자 등(이하 ‘대회·행사

참가자'라 한다)]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

마. 협회가 보유하거나 사용권한을 갖는 시설

6. “상업권자”란 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협회에 후원금, 로열티, 방송권료 등 대가를 내고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마케팅자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후원권자, 상품화권자, 방송권자 등으로 구분된다.

7. “마케팅 대행”이란 협회가 유관단체 또는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자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유관단체”란 국제농구연맹(FIBA)과 시도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등 농구관련 국내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마케팅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다.

1. 후원권에 관한 사업

가. 후원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나. 후원권자의 유치와 계약

다. 후원권자의 후원권리 이행, 지원 및 관리

2. 상품화권에 관한 사업

가. 상품화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나. 상품화권자의 유치와 계약

다. 상품화권자의 상품화권리 이행, 지원 및 관리

3. 방송권에 관한 사업

가. 방송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나. 방송권자의 유치와 계약

4. 협회가 보유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시설 및 행사 등에 관한 사업

- 가. 협회 주최(주관)대회 또는 행사의 입장권 판매 또는 위탁판매
 - 나. 협회가 보유하거나 사용권한이 있는 시설을 활용한 마케팅
 - 다. 경기장 이벤트 및 관련 행사 등 개최·운영
 - 5. 마케팅자산과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
 - 6. 유관단체와의 마케팅관련 사업
 - 가. 유관단체와의 공동마케팅 계약 등
 - 나. 유관단체와의 공동상업권자 모집 등
 - 7. 마케팅 대행 사업
 - 가. 유관단체 마케팅 대행 또는 자문
 - 나.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마케팅 대행 또는 지원
 - 8. 마케팅자산의 등록,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 9. 기타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협회는 제1항의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케팅전문회사를 대행사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마케팅 수익 등의 사용) 마케팅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협회의 자체 수입으로 하며, 한국농구의 미래발전 등을 위해 사용한다.

제5조(퍼블리시티권의 귀속) 대표팀원의 퍼블리시티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대표팀원 초상’이라 하고, 이에 대한 활용권리는 협회에 귀속된다.

- 1. 협회가 지급한 공식 복장을 착용한 초상
- 2. 사진, 동영상 및 기타 매체 형태를 불문하고 대표팀의 소집 기간(소집일 부터 소집해제일까지)에 열린 국내외 대회, 행사 등에서 얻어진 대표팀원의 초상, 경기 장면, 연습 장면, 인터뷰 장면 등

제6조(퍼블리시티권의 사용) ① 협회는 대표팀원의 퍼블리시티권을 협회의 광고 및 홍보 활동 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대표팀원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팀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후원계약이나 기타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회 마케팅규정 제2조제4호 퍼블리시티권을 준수할 의무를 계약 상대방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제3자의 집합적 퍼블리시티권의 사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집합적 퍼블리시티권이라 하며 협회는 이를 공식후원사 및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사용자는 사용 전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 화면 및 물품 등에 3인 이상의 선수로 구성된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는 경우
2. 각 화면 및 물품 등에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사용되지만, 동일한 제작 및 조건에 따라 최소 5인 이상의 선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8조(기타 퍼블리시티권의 사용) 협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대회에서 티켓이나 출입증으로 경기장 안에 들어온 자의 음성, 영상 및 초상 등의 사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의 사용 권리를 협회가 보유한다.

제9조(후원권자) 후원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협회에 제공하고, 마케팅 자산을 계약으로 정해진 범위와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상품화권자) 상품화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협회에 제공하고, 마케팅자산을 활용하여 계약으로 정해진 품목, 범위, 방식 등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방송권자) ① 방송권자는 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마케팅자산을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방송, 전송, 배포 및 기타의 방법으로 유통할 수 있다.

② 방송권자의 방송권 대상은 협회 주최(주관)대회 또는 행사 등이 있다.

③ 방송권자는 방송권 이용 시 협회의 후원권자 또는 상품화권자의 광고물과 상품 등이 노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업권자의 권리보호) ① 협회는 신의성실로 계약이 정하고 있는 상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② 협회는 상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상업권자의 책무) ① 상업권자는 협회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업권자는 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리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업권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권리를 행사 하거나, 협회와 마케팅자산의 품위나 명성, 이미지에 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매복마케팅의 금지 등) ① 상업권자가 아닌 자는 협회의 사전승인 없이 마케팅자산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상업권자가 아닌 자가 자신 또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마케팅자산과 연계하여 협회, 대회 또는 행사, 대회·행사 참가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상업권자가 아닌 자가 협회가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협회, 대회 또는 행사, 대회·행사 참가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제15조(대회·행사 참가자 등 관련 협회 권리) ① 대회·행사 참가자의 경우, 다음 각 호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는 협회에 귀속된다.

1. 대회 또는 행사의 공식 복장을 착용한 초상, 성명, 이미지 등
2. 대회 또는 행사 참가(경기, 연습, 인터뷰 등 포함) 등에서 얻어진 참가자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

② 대회 또는 행사에서 입장권이나 출입증(AD카드 등)으로 경기장 또는 행사장 안에 들어온 관중 및 기타 관계자의 초상에 관한 권리는 대회 또는 행사의 규정, 입장권 약관 등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거나 행사한다.

제16조(대회·행사 참가자 및 상업권자 등의 준수사항) ① 대회·행사 참가자는 대회 또는 행사 참가 시 협회의 공식복장과 지급용품을 착용한다. 협회의 공식 복장과 지급용품을 착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상업권자는 이 규정 제15조제1항과 관련된 대회·행사 참가자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대회·행사 참가자 또는 상업권자가 아닌 자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대회 또는 행사 기간에 국내에서 이 규정 제15조제1항과 관련된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④ 대회·행사 참가자 및 상업권자 등이 본 조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제반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칙(2024. 01. 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2024. 1.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협회와 계약이 유효 중인 상업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